大統領裁可日字
檀紀4293年4月19日

秘

完結
未完結

決裁年月日

施行年月日

4293.4.19

(記號) 法制 川 第十九號

檀紀 年 月 日 接受

檀紀四二九三年四月十九日 起案

淨書

關聯番號

編纂類別

照對

帳記

印鈐

類

保存種別

種

大統領

法制室長

第一局長

總務課長

主務者

書記官

起案者

國務院事務局長 (經由)

法制官

件名 戒嚴司令部設置案公告의件

檀紀四二九三年四月十九日國務會議에서議決된標記의件을다음과 같이 公告함이 可하오리까

사본첨부

국무원사무국 접수 4월19일16시35분 경유제143호

大統領秘書室 接受 4293.4.19 第323

0439 184

大統領裁可日字
檀紀4293年4月19日

(公告案)

國務院公告第八十四號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戒嚴法施行令第十四條및 戒嚴司令部職制第三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戒嚴司令部를 特別市에, 地方戒嚴事務所를 慶尙南道釜山市, 慶尙北道大邱市, 忠淸南道大田市, 全羅南道光州市에 各設置하고 戒嚴司令部에 行政課, 法務課, 動員課및 治安課를 둔다

大統領

檀紀四千二百九十三年四月十九日

國務委員國防部長官 귀하

(第二案)

公報室長 貴下 法制室長

同 件

標記의 件을 別紙와 如히 公告하여 주시기 敎望하
나이다

(別紙는 公告案과 같음)

(第三案)

國防部長官 貴下

法制處長

同 件

標記의 件 別紙와 같이 公告하였오니 察知하시기 바라나이다.

(別紙 公告案과 같음)

국 방 부

국방총제 1461 호 4293. 4. 19.

수신자. 법제실장

제 목. 계엄사령부 설치 공고에 관한건

윗건에 관하여 국무원 공고제82호 및 제83호로 선포된 비상계엄 실시에따라 계엄사령관 소속하에 계엄사령부를 설치코저 하오니 계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공고 조치하여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끝

국방부 장관 김 정 렬

0443

계엄사령부 설치 (국무원 공고제 호
4293. 4. 19. 17.00)

국무원 공고 제82호 및 제83호로 선포된 계엄실시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계엄 사령관의 계엄시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 소속하에 다음과 같이 계엄사령부와 그 보조기관을 둔다.

1. 계엄사령부를 육군본부에 둔다.
2. 계엄사령부에 보조기관으로 행정과, 법무과, 동원과 및 치안과를 둔다.

0444

189